4세대 실손의료비전환 특별할인 특별약관(2207)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이 4세대 실손의료비전환 특별할인 특별약관(2207)(이하 ‘특별약관’이라 합니다)의 적용 대상은 아래에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중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상품에 한합니다.

1.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른 상품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계약에 한합니다.
2. 적용기간은 계약체결시점부터 1년으로 하며,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3. 제1호 내지 제2호의 할인 대상 보험료는 예정사업비(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)가 부가된 보장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제2조(보험료 할인 대상 및 보험료 할인)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‘특별할인’은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비보장의 보장보험료에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